



대구대학교

"ACE+ ACE+, ACE+ LINC+"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 개정 안내

1. 대학원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교원에게 대학원생을 연구조교 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점차 축소되는 예산규모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조교에게 지원되는 학비감면액과 지급방법 등을 조정하여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현행	개정 (안)	비고
제3조(연구조교에 대한 지원) ① 선정된 연구조교에 대하여는 선정된 기간동안 수업료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학비 감면)한다. 다만, 매 학기마다 연구조교를 배정 받은 교원은 연구조교 활용계획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조교에 대한 지원) ① 선정된 연구조교에 대하여는 선정된 기간동안 수업료 중 내국인은 60%, 외국인은 8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2019학년도부터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60%를 지원한다. 다만, 매 학기마다 연구조교를 배정 받은 교원은 연구조교 활용계획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4조(연구조교의 활용자격) 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전임교원으로 내·외국인 구분없이 최대 4인 까지 지원한다. 다만, 배정된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실적이 우수한 교원(최근 2년간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실적이 5편 이상인 경우)에게는 2인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조교의 활용자격) ①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전임교원으로 내·외국인 구분없이 최대 2인 까지 지원한다. 다만, 배정된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실적이 우수한 교원(최근 2년간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국제저명학술지 논문실적이 5편 이상인 경우)에게는 2인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9조(연구조교 활용교원의 임무) 내국인 연구조교를 배정받은 교원은 배정학생의 매학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부연구과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연구조교 활용교원의 임무) <삭제>	조 삭제

다. 시행 및 적용 일시: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임 대학원생 연구조교 운영지침 1부. 끝.

대구대학교총장

수신자 대학원장(종합행정실장), 교육대학원장(행정실장)

담당 박영임 연구지원팀장 전결 12/04
박배호

협조자

담당 황성규 종합행정실장 이중학 대학원부원장 하달수 대학원장 12/04
협조자 조희금

시행 연구지원팀-670 (2017.12.04) 접수 대학원 종합행정실-1298 (2017.12.04)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전화 053-850-5143 전송 053-850-5149 / libark@hanmail.net / 공개
"교육목표 : 유능한 전문 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